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세분화된 개별급여 수급자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,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의 주거안정자금 용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가. 당초 :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」

나. 변경 :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」

○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변경(안 제1조, 제3조)

가. 당초 : 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
나. 변경 : 수급자(생계급여·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)

○ 주거안정자금 용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경(안 제6조)

가. 당초 :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제4조

나. 변경 :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, 제11조

○ 감면 조치 대상 변경(안 제21조)

가. 당초 :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

나. 변경 :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생계급여·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하고, 상위법의 주거안정자금 용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- 감면조치 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